

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개요

- 목적 : 유엔 제3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회의 (The 33rd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참관 (북한 정례인권심사)
- 기간 : 2019년 5월 8일 - 16일 (7박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유엔 인권이사회 (스위스 제네바)
- 여행자 인적사항 : 형사법제연구실 김한균

II. 출장내용

- 회의일정

		Monday 6 May	Tuesday 7 May	Wednesday 8 May	Thursday 9 May	Friday 10 May
1 st week	9:00-12:30	Review of Norway	9:00-12:30	9:00-12:30	9:00-12:30	9:00-12:30
			Review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Review of Portugal	Review of Dominican a	Review of Brunei Darussalam
	14:30-18:00	Review of Albania	14:30-18:00	14:30-18:00	14:30-18:00	15:00-18:00
			Review of Côte d'Ivoire	Review of Bhutan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stribution of the reports on Portugal and Bhutan
				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Norway	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doption of the reports on Norway, Albani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ôte d'Ivoire, Portugal and Bhutan
				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Albania	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Côte d'Ivoire	
		Monday 13 May	Tuesday 14 May	Wednesday 15 May	Thursday 16 May	Friday 17 May
2 nd week	9:00-12:30	Review of Costa Rica	09:00-12:30	09:00-12:30		
			Review of Ethiopia	Review of Qatar		
			Distribu	Distributi		

		<i>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Dominica</i>		<i>tion of the report on Brunei Darussalam</i>		<i>on of the report on Costa Rica</i>		
	14:30-18:00	Review of Equatorial Guinea		Adoption of the reports on Dominic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Brunei Darussalam		Review of Nicaragua		<i>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Ethiopia</i>
		<i>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i>	16:30-18:00		14:30-18:00	<i>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Equatorial Guinea</i>	16:30-18:00	Adoption of the reports on Costa Rica, Equatorial Guinea and Ethiopia
							17:00-18:00	Adoption of the reports on Qatar and Nicaragua

○ 주요 활동 내용

1. 5월 8일 (수) 서울 출발 - 파리 경유 - 제네바 도착
2. 5월 9일 (목)
 - 유엔 인권이사회 참관 등록
 - 14:30-18:20 북한 정례인권심사 참관



- 북한대표단 : 한대성 주제네바 대사 (단장), 이경훈 (최고인민위원회), 김순화 (최고인민위원회), 박광호 (인민법원), 리혜련 (교육위원회), 한채순 (보건부), 장일훈(외교부), 조광성 (외교부), 박광은 (제네바 부대사), 문정태 (제네바 부대사)

- 89개 회원국 지적 및 권고 (10개국은 서면제출)에 대한 북한대표단 답변내용 :

첫째, 정치범이나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그런 표현은 없다. 강제노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31조 형벌의 종류로서 노동교화형이 있을 뿐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사회주의 헌법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침해나 차별도 금지되어 있다. 형법상 처벌하기 때문이다.

셋째,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비롯, 자의적 처형, 강제수용소, 강제노동, 연좌제 처벌, 성분제 차별, 탈북자 처벌 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들 하는데, 사회주의 헌법상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화국 적대세력의 음모적 책동"에서 나온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다.

넷째, 북한정부의 인권보장과 증진 노력에 최대 장애는 국제사회의 "야만적이고 위선적이며 정치적인" 반복한 인권결의안들과 제재들이다.

- 대한민국정부의 권고

첫째,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 권고

둘째, 유엔기구와 지속가능발전계획 등 협력하여 보건권을 향상할 것.

셋째,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 의무를 이행할 것.

넷째, 납북포로, 납북자 송환 촉구

3. 5월 10일 (금)

- 9:00-12:30 브루나이 정례인권심사 참관

- 14:30-18:00 노르웨이, 부탄, 포르투갈, 콩고, 알바니아, 코트디브와르 보고서 채택 참관

4. 5월 13일 (월)

- 14:30-18:00 북한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배포
-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백태웅 교수 면담
- 북한 인권 공적 책임성 문제는 추상적인 인권원칙적 문제제기, 정치적인 인권문제 이용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오히려 북한인 국제인권체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응하려는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법적 사안, 예를 들어 구금시설 공무원에 의한 강간 등을 법적 증거가 뒷받침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북한 당국 스스로 인권현안으로서 처리하게 하는 구체적 노력이 인권침해 공적책임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미국 월비어 사건은 북한 형사사법 관할내에서 미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첫 사례다.
-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공적 책임성 문제를 겨냥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감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북한 형사법제와 인권법제에 따라 문제제기하는 방안이다.
- 과거청산의 문제는 가해자적발 처벌외에도 피해회복과 진실규명도 중요하다. 강제수용소 주변 발굴확인 작업 등.

5. 5월 14일 (화)

- 16:30-18:00 북한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참관



- 실무그룹은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다.
- 북한 대표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은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많다. 또한 성분 차별의 종식, 국가 이념에서 기독교 역할의 재고, 고문과 비인간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강구, 정치범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과 지원 허용,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 국가 자원 배분을 군사비보다 기아 퇴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에 우선시 하라는 호주의 권고, 식량과 배급에 정치적 고려 등 차별하지 말라는 브라질의 권고,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스페인의 권고도 거부했다.
- 북한은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모두 거부했다.
-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우리 정부가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사안 제기, 일본의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거부했다.
- 반면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법 개정이다.
- 북한은 올해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의 의미

-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93개 사항을 거부했고 58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4개 사항에 대한 부분적 수용 의사를 표명한 반면, 93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2019년 3월 7일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북한 인권침해 책임문제의 진전」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진전시킬 것을 권고한 2017년 유엔이사회 결의안 34/24 내용의 실현상황 및 유엔인권최고대표부 북한인권책임문제 전담기관 활동성과에 대한 보고서다.

- 2017년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인권침해와 공적 책임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 즉 2016년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의거하여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규명할 독립전문가 그룹(independent experts to support the work of Special Rapporteur on DPRK)이 구성되었는데, 독립전문가그룹은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고, 반인도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과 진실규명이 가능한 실질적 책임규명 기제를 제안하데 목적이 있다.

- 전문가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책임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multi-pronged and comprehensive approach)을 택할 것을 권고했다.

- 이러한 방식에는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북한인권특별재판소, 보편적 관할권원리에 입각한 각 회원국의 형사소추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모니터와 문서화작업, 정보 및 증거자료 보존관리, 향후 책임규명절차에 활용가능하도록 법적 책임성 전문가의 관련 정보와 증언을 평가하는 작업을 권고했다.

-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동 그룹의 권고내용 이행을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권한을 강화한다.

- 2019년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다수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여전히 계속 되

고 있을 가능성(may be ongoing)이 있다.

둘째, 유엔 인권최고 대표 사무소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성 문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의안 34/24 이행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실현을 위한 미완의 과업이 상당하다.

셋째, 북한인권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당한 문서가 수집되었지만, 국제형사법적 관점에서 평가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평가작업은 북한인권침해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자행된데다가, 북한 권력층 구조가 대단히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 공적책임성 프로젝트의 권한과 활동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원을 확대강화한다면, 국제형사법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고 관리 및 법적문제 전담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된 책임성 문제 전담팀(accountability team)을 서울사무소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수집된 문서 평가분석,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 실태 및 법적 문제 조사분석, 문서화작업 및 조사 전략 수립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현 단계로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 곤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인권 책임성 관련 작업이 한국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서울주재 전담팀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도 국제법 및 정보관리 전담전문가로 별도의 팀을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침해 관련기록 문서는 보안상 제네바에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국제특별법정을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활용하여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계속해서 권고한다. 이는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장래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 2019년 보고서의 북한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a) 반인도범죄에 상응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즉시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침해 사안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b) 북한내 구금시설을 포함,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모니터의 접근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사회결의 34/24와 관련된 인터뷰와 문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d)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상응하여 형사법원, 법집행기관, 교정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 입법과 법치주의 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initiate reform of criminal justice legislation and rule of law institutions)

(e) 반인도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충분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회복조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와 피해의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 (public acknowledgement of the truth of the violations suffered)

(f) 국제기준에 상응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내법원 재판절차를 통해 (in national court through fair and impartial trials) 국제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g)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조약(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해야 한다.

- 2019년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비핵화와 평화협상 진전에 비추어 볼 때 변함없이 심각한 북한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유감스럽다.

- 모든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이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여전하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투옥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모든 북한주민들 의식에 퍼져 자리 잡고 있다. 북한 체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할 권리, 이전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정책결정과 집행의 행정효과성, 정부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제도개혁 과정에 동참하고 지원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은 인권외교(human rights diplomacy)와 병행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상에서 심각한 인권상황을 간과한다면 협상 자체의 지속성도 위협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결과다.

- 북한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a) 법과 실무 모두 출입국의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 송환된 주민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b)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을 최우선 고려해서 보장해야 한다.

(c)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과 의사표명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

적 참여의 자유가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d) 국제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e)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에 유엔과 인도적 지원조직의 접근을 개방하고 적절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f) 핵심노동기준 준수를 위해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g) 북한내 억류중인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비엔나영사협약에 따른 영사조력을 보장해야 한다.

(h)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

(i) 전국적인 수형시설 상황에 대한 점검과 국제기준에 상응한 행형시설 개혁, 교정행정에 있어서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위해 유엔인권체계와 국제적십자사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j) 국제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k) 2019년 5월 제3차 UPR을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인권대화를 시작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l)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방문 등 대화해야 한다.

(m)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또한 한국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a) 평화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인권문제를 통합해야 한다.

(b) 이산가족상봉에서 권리중심, 피해자중심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c) 북한과 인적교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d) 남북경협과 인도적 협력에서 인권기반 기본틀이 통합되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a) 유엔 북한인권 책임성문제 담당팀과 프로젝트의 활동연장과 지원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b)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권고한다.

(c) 인권침해 감독과 문서화작업을 지속하고 인권상황 모니터 결과를 북한의 법과 정책 변화 지지에 활용해야 한다.

(d) 평화와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문제가 포함되도록 회원국들과 대화해야 한다.

(e) 인도적 지원단체 활동과 북한인권 증진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f) 제3차 북한 UPR을 북한인권상황 개선과 UPR 권고안 이행상황 부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2019년 3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the strongest terms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를 가장 강력한 태도로 비판한다.

- 2019년도 인권결의안 역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a) 독립적 언론 허용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보장

(b) 출신(성분)에 따른 체계적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 확보 및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c) 이전의 자유 보장

(d) 인도지원 관련 투명성 보장

(e) 강제노동 등 정치범 수용소내 모든 인권 침해 즉각 중단, 모든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수용자 석방, 구금자에 대한 자의적 형집행 즉각 중단,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한 사법개혁.

(f) 납북 및 강제실종 문제 해결

(g) 이산가족 상봉 보장

(h) 연좌제 처벌 즉각 폐지

(i) 북한내 이전의 자유 및 출국의 자유 보장

(j) 북한내 억류 외국인에 대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보호조치 제공

- 또한 2019년 결의안은 북한 당국은 반인도범죄 및 인권침해를 형사소추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과 유엔체계,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모든 관련당사자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북한인권 책임 규명문제에 협력함으로써 인권침해 범죄자들이 처벌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침해 모니터 및 문서화작업, 정보 및 증거 보존소 설립,

향후 책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증언을 법적 책임성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과업을 위한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도 1년 연장 결정했다.

-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특별절차에 협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IV. 첨부자료

- 국외출장계획서
- National Report of DPRK
- 증명자료
 - 유엔인권이사회 등록메일
 - 항공권 및 영수증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